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미래지향적 개선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2022.3.31.(목)
14:00~17:00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미래지향적 개선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2022.3.31.(목)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목 적

문화재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22.3.31.(목). 14:00~17:00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 토론주제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미래지향적 개선

세부일정표

[사 회] 조일형(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시간	주요일정	주요내용	
~14:00	등 록	참석자 등록	
14:00~14:05 (5')	소 개	참석자 소개	
14:05~14:10 (5')	개회사	강경환(문화재청 차장)	
14:10~14:15 (5')	인사말	전영우(문화재위원회 위원장)	
14:15~14:20 (5')	기념촬영	기념촬영	
14:20~15:20 (60')	주제발표	주제 1 (20')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방향 황권순(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과장)
		주제 2 (20')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이은하(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
		주제 3 (20')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비용 추정 이용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
15:20~15:40 (20')	휴 식	휴식 및 장내정리	
15:40~17:00 (8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좌 장 : 전영우(문화재위원회 위원장) - 발표자 : 황권순(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과장) 이은하(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 이용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 - 토론자 : 김충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임승빈(명지대학교 교수) 정상우(인하대학교 교수)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7:00	폐 회		

목 차

- 주제발표 1 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방향
황 권 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과장)

- 주제발표 2 15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이 은 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3 3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비용 추정
이 용 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방향



황권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과장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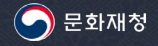
2022. 3.



목 차

I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II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III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IV	대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V	(참고) 국가유산 국내외 사례

I.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1) 추진 배경

“문화재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

- (국제기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국내 분류체계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 (명칭체계)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 내포, 시대변화를 반영한 재정립 필요
 -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원용 △과거 유물의 자산, 재화적 성격이 강함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지적
 - △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등 명칭 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2) 추진 방향

“국제협약의 분류 방식 원용, 문화재법 및 행정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 (명칭 개선)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산(遺産)’으로 변경 검토
 - * 문화재(재화, 사물, 가치, 행정, 규범적 한정) ⇒ 유산(계승, 활용, 미래, 포괄적 보호로 의미 확장)
- (분류체계 개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광역유산 △복합유산 등으로 대분류하고, 포괄적 통칭으로 ▲국가유산 용어 채택
 - * 하위분류는 개별유산의 속성·형태 고려 및 지정체계와 연계하여 검토

1/18

II.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1) 추진 경과

“내부·외부 문화재 전문가, 일반국민 대상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실시”

◇ 과거 논의 진행 상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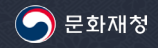
- ▶ 2005년 문화재청, 「문화재 분류체계」
- ▶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 ▶ 2017년 문화재청,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 2022년 추진 경과 ◇

- (1.13.) 분류체계 개선 내부TF 회의 개최
- (1.26.)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전 의견수렴 회의 개최
- (2.8.~3.15.)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의견수렴(9개 분과 보고(원안 접수))
- (2.17.) 문화재분야 [전문 언론인](#) 대상 자문회의
- (3.18.) [불교계\(조계종\)](#) 대상 개선안 의견수렴 설명
- (3.18.~3.22.)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3.18.~3.22.) 문화재 명칭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3.3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문화재 명칭·분류체계, 미래지향적 개선’)

2/18

Ⅱ.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2) 향후 계획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 확정, 정책 반영 추진”

- (4.11.) 문화재위원회(무형 포함) 분과위원장단 회의 및 기자단 브리핑
 - * 대상 : 분과위원장 12명 / 문화재청 담당 기자단 등
 - * 내용 :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 확정·보고 / 결의문 채택(낭독) 및 전달(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 기자단 질의·응답
- (~22. 中)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 분석
 - * 내용 : 사회적 효과 및 비용, 후속조치 세부방안 마련 / 대국민 인식 홍보
- (~22. 下) 분류체계 개선안 반영, 국가유산기본법(가칭) 제정안 마련

재(財) → 유산(遺産)

◇ 문화재의 유산 개념 변경 및 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국민 친화적·포괄적 미래유산 보호 등 정책기능 대전환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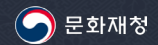
• (국가유산 체제 도입) 재화 개념의 ‘문화재(財)’탈피, 역사·정신까지 포함한 ‘유산(遺産)’ 개념 변경

- 지정기준의 변화(문화재 :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 → 유산 :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등 역사·정신까지 확대)
- 공동체·지역발전의 원천자산 변모,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세계유산 협력·등재 활성화, 주변국 역사왜곡 적극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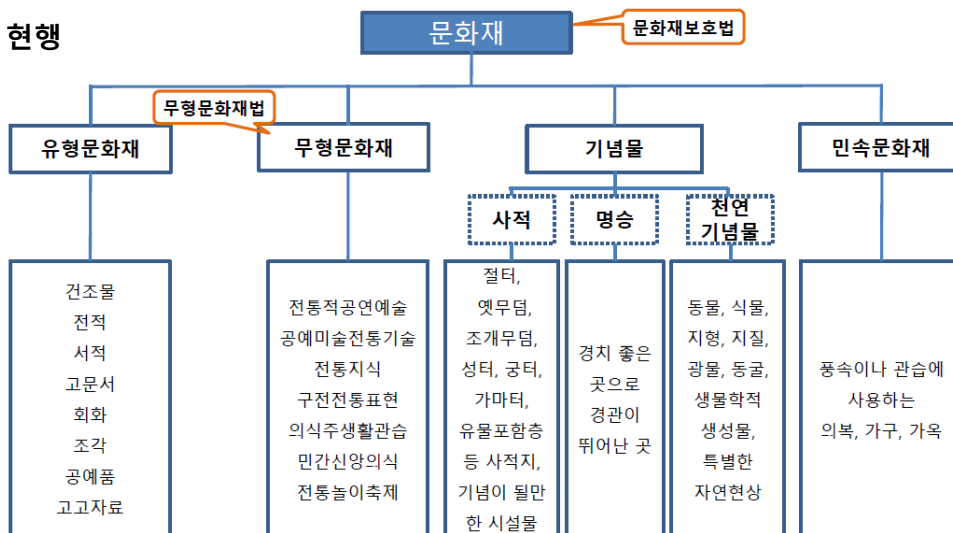
※ 국가 유산을 통한 헌법 상 문화국가 원리(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 이바지) 실현

3/18

Ⅲ.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1)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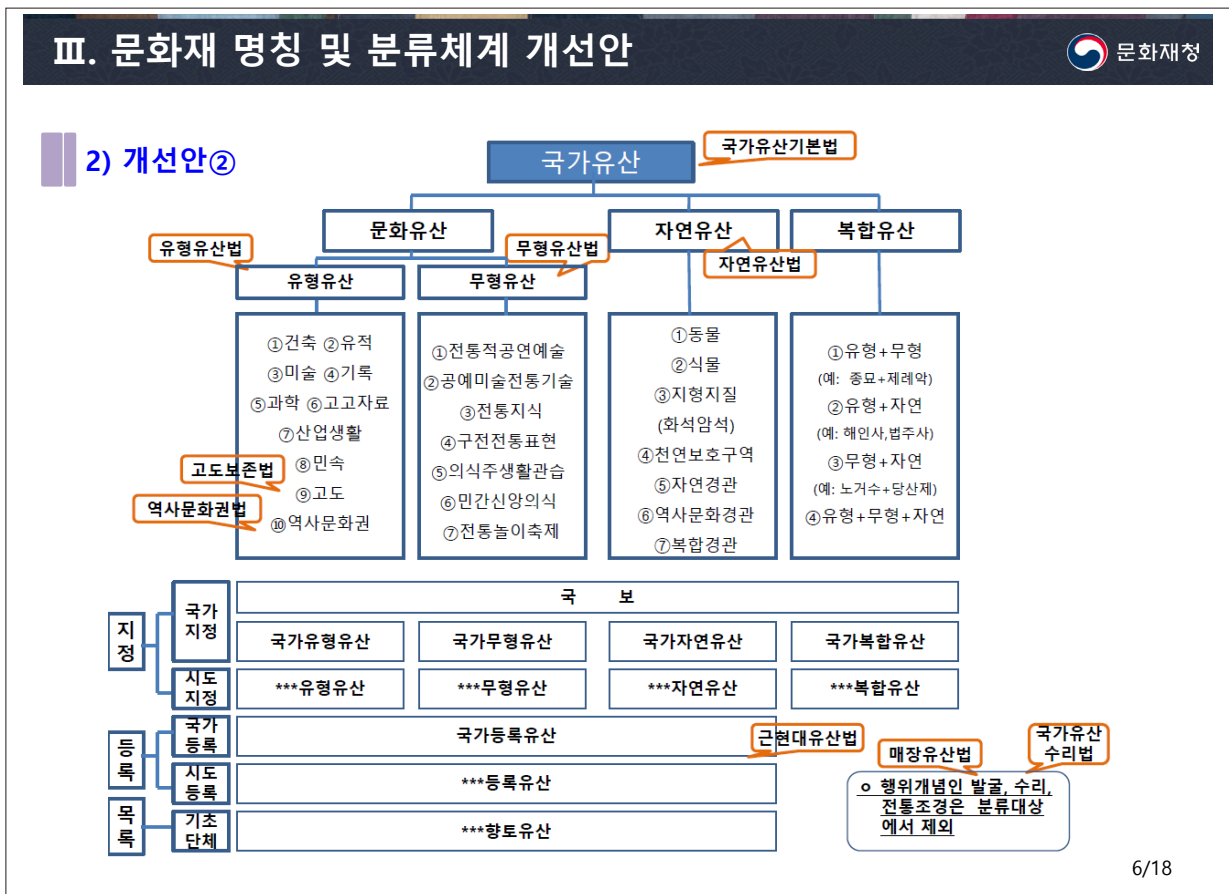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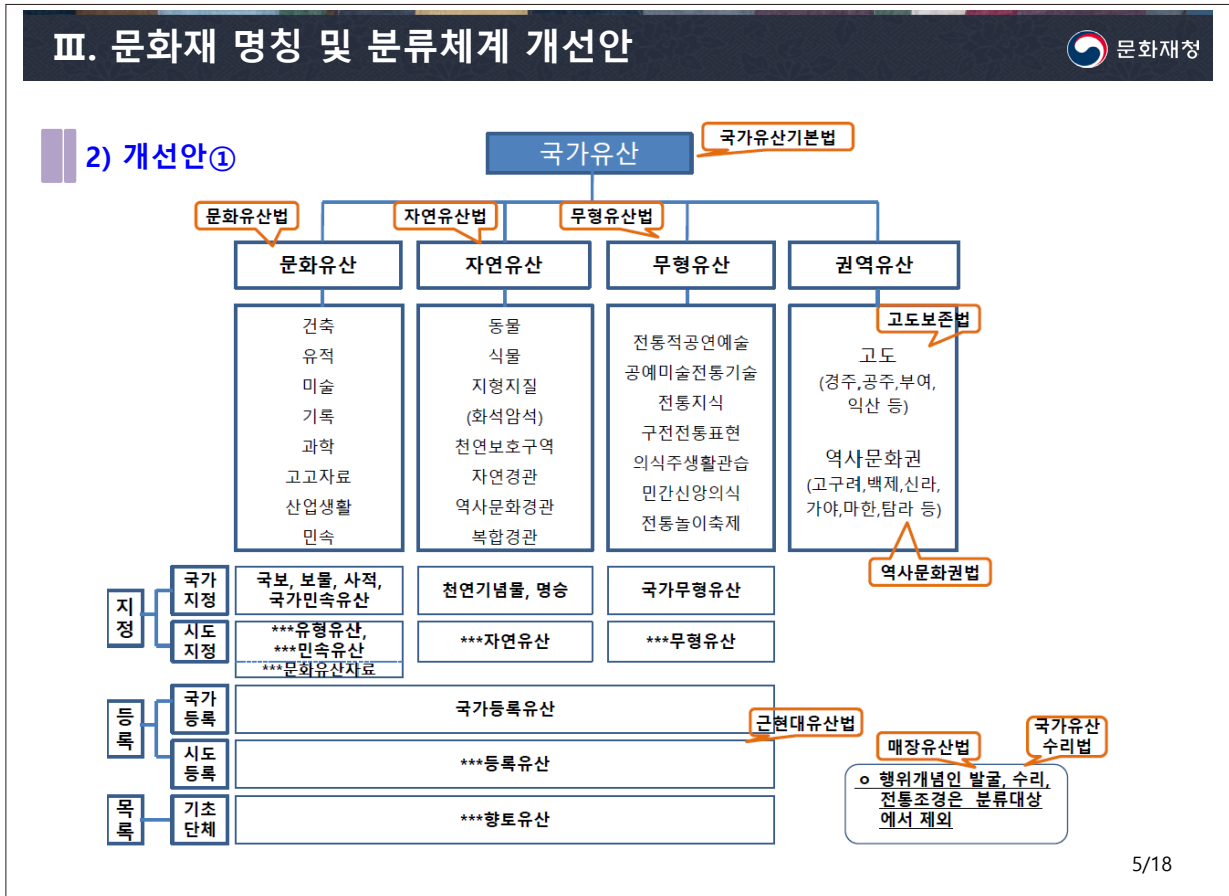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 국가무형,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지정문화재(***유형, ***기념물, ***민속, ***무형)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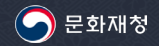
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등록명칭 無)
 시도등록문화재(등록명칭 無)

- 고도보존법
- 역사문화권법
- 매장문화재법
- 문화재수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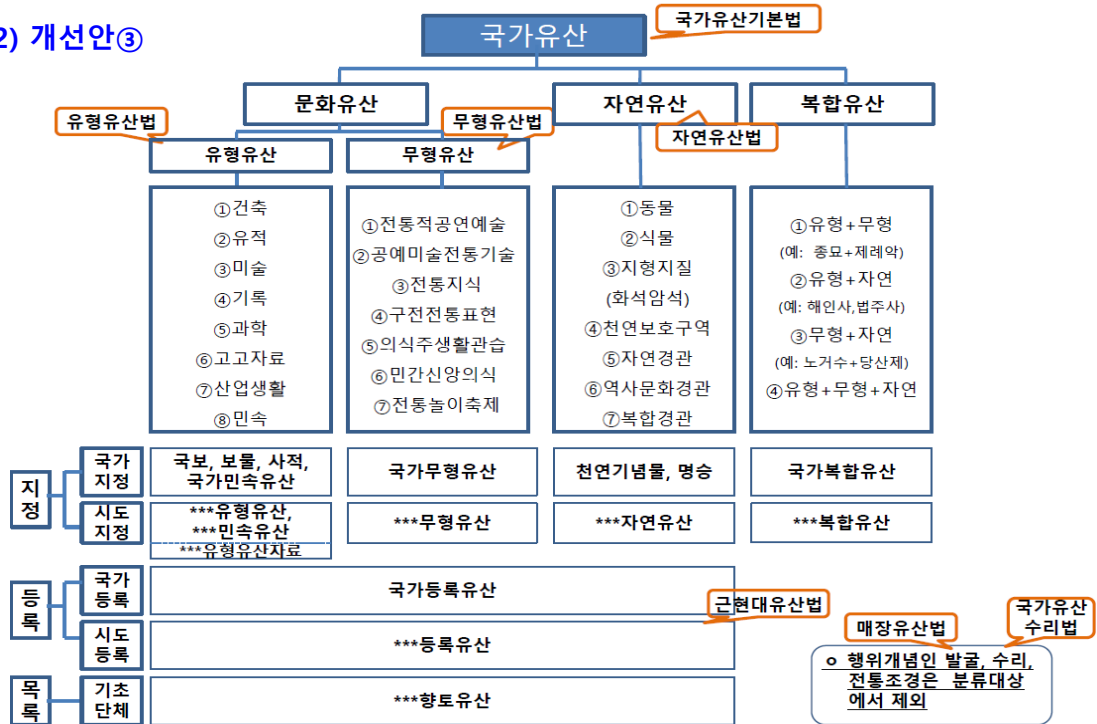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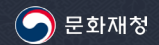
Ⅲ.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2) 개선안③




Ⅳ. 설문조사 결과



1-1)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만19~69세 성인 남녀
🔍 표본 수	• 1,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방법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지역/성/연령별 비례배분
🔍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심도 • 문화재 방문 경험 및 횟수 • 문화재 용어 의미 인지 수준 • 문화재 명칭 변경 필요 여부 • '유산'으로 변경 적절성 • '국가유산'으로 변경 적절성
🔍 조사 기간	• 2022년 3월 18일~22일

IV.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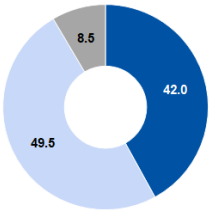


1-2)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 용어 알고 있다 42.0%,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 76.5%”

- ‘문화재’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2.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모른다’(8.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76.5%가 ‘그렇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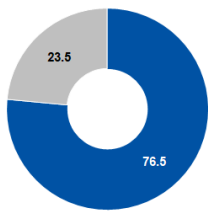
① 문화재 용어 인지수준



응답	비율 (%)
알고 있다	42.0
보통이다	49.5
모른다	8.5

②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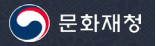
[Base: 전체(n=1,000), Unit: %]



응답	비율 (%)
그렇다	76.5
아니다	23.5

9/18

IV.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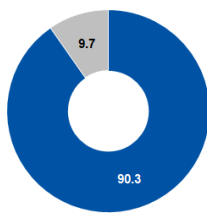
1-2)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유산 개념 변경 적절 90.3%, 국가유산 변경 적절 87.2%”

- 문화재 명칭을 재화의 성격을 가진 ‘재’에서 역사·경신의 성격을 가진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응답자의 90.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임
-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87.2%가 ‘그렇다’고 응답함.
-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12.8% / 128명)들이 생각하는 문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으로는 ‘문화유산’이 44.5% (57명)로, ‘현행 유지(‘문화재’)' 의견도 25.8% (33명) 순으로 나타남

① 유산으로 변경 적절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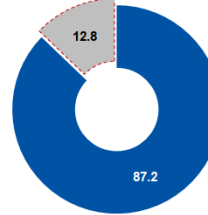
[Base: 전체(n=1,000), Unit: %]



응답	비율 (%)
그렇다	90.3
아니다	9.7

② 국가유산으로 변경 적절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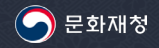
[Base: 전체(n=1,000), Unit: %]



응답	비율 (%)
그렇다	87.2
아니다	12.8

10/18

IV.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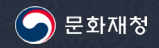


2-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Q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위원회 등 위원·전문위원 471명 * 문화재위원회 258명, 무형문화재위원회 52명, 수리기술위원회 70명, 고도보존역사문화권위원회 24명
Q 응답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4명(86%)
Q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Q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 제공 전문가 리스트 활용
Q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명칭 변경 필요 여부 '유산'으로 변경 적절성 문화재 대체(국가유산 등) 적절한 명칭 무형/자연/복합 유산 국보 지정 필요 여부 무형/자연유산 등록유산 등록 필요 여부 문화재자료 시도지정문화재 일원화에 대한 의견 '목록유산' 신설에 대한 의견 개선안 1~3안 선택
Q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3월 18일~22일

11/18

IV.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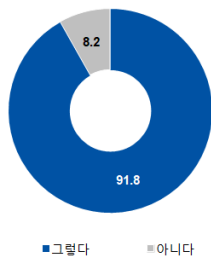


2-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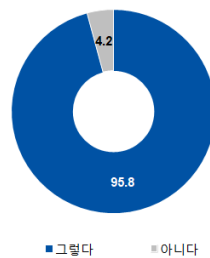
“ '문화재'라는 명칭 개선 필요 91.8%, '유산'으로 변경 필요 95.8% ”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91.8%가 '그렇다'고 응답함
- 문화재 명칭을 재화의 성격을 가진 '재'에서 역사·경신의 성격을 가진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응답자의 95.8%가 '그렇다'고 응답함

①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유무 [Base: 전체(n=404),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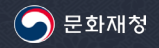


② 유산으로 변경 적절성여부 [Base: 전체(n=404), Unit: %]



12/18

IV.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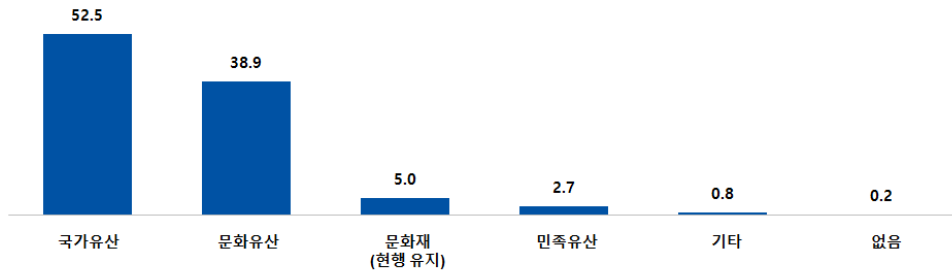
2-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라는 명칭 개선 가장 적절한 용어로 ‘국가유산’이 52.5%로 가장 높음”

-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할 때 가장 적절한 용어로는 ‘국가유산’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문화유산’(38.9%), ‘문화재’(5.0%), ‘민족유산’(2.7%)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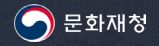
문화재 명칭 개선시 가장 적절한 용어

[Base: 전체(n=404), Unit: %]



13/18

IV. 설문조사 결과



2-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국보 지정대상 확대 59.4% 찬성, 등록유산 대상 확대 78.2%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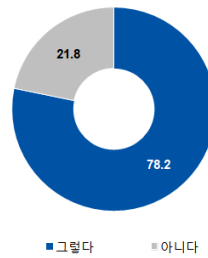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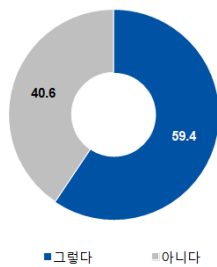
- 무형/자연/복합유산도 국보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9.4%가 ‘그렇다’고 응답함
- 무형/자연유산도 등록유산으로 등록할 필요에 대해서는 78.2%가 ‘그렇다’고 응답함

무형/자연/복합유산 국보 지정 필요 여부

[Base: 전체(n=404),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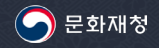
무형/자연유산 등록유산 등록 필요 여부

[Base: 전체(n=404), Unit: %]



14/18

IV.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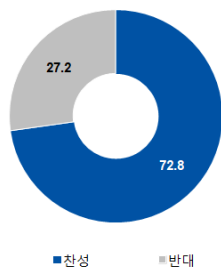


2-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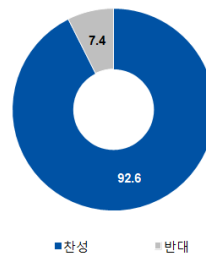
“문화재자료 시도지정문화재와 일원화 72.8% 찬성, 목록유산 신설 92.6% 찬성”

- 문화재자료를 시도지정문화재와 일원화(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2.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① 문화재 자료 시도지정문화재일원화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404),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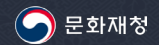


② ‘목록유산’ 개념 신설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404), Unit: %]



15/18

IV.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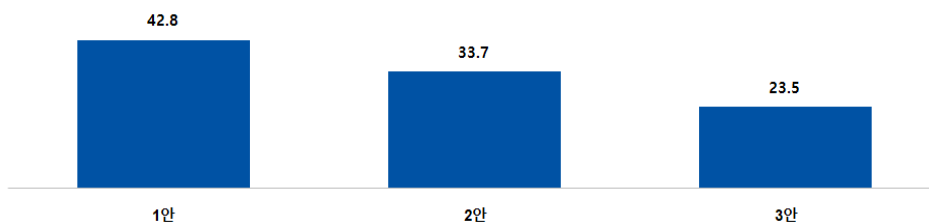


2-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류체계 개선안 중 ‘1안’이 42.8%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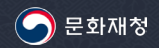
- 1~3안 중 가장 적절한 분류 체계 개선안은 ‘1안’이 42.8%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2안’(33.7%), ‘3안’(23.5%)의 순으로 나타남

① 적절한 분류 체계 개선안 [Base: 전체(n=404), Unit: %]



16/18

V. (참고)국가유산 사례



1) 국가유산 용어 해외 사용 사례

□ 영 국 : 국가유산법(The National Heritage Act 1980) 및 국가유산기념기금(The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 국가유산을 법률 용어로 사용한 첫 사례, 1980년 국가유산법을 제정, 1981년 국가유산기념기금을 조성

□ 캐나다 : 국가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 1995년 국가유산부 발족을 위한 법을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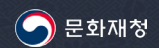
□ 호 주 : 국가유산 목록(The Australian National Heritage List or National Heritage List)

- 2003년부터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중요한 곳을 국가유산으로 정하고 목록을 작성

□ 미 국 :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101)

17/18

V. (참고)국가유산 사례



2) 국가유산 관련 '국가' 용어 사용례

□ 조직 및 기구, 기관

-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기술표준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철도공단, 국가교통정보센터, 국가한옥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 사업 관련 명칭

- 국가공간정보, 국가기술자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지식정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국가표준, 국가시험,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통계, 국가중요농업(어업)유산, 국가지정기록물, 국가장학사업, 국가하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가 용어 법률 명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배상법, 국가회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표준기본법 등

18/18

감사합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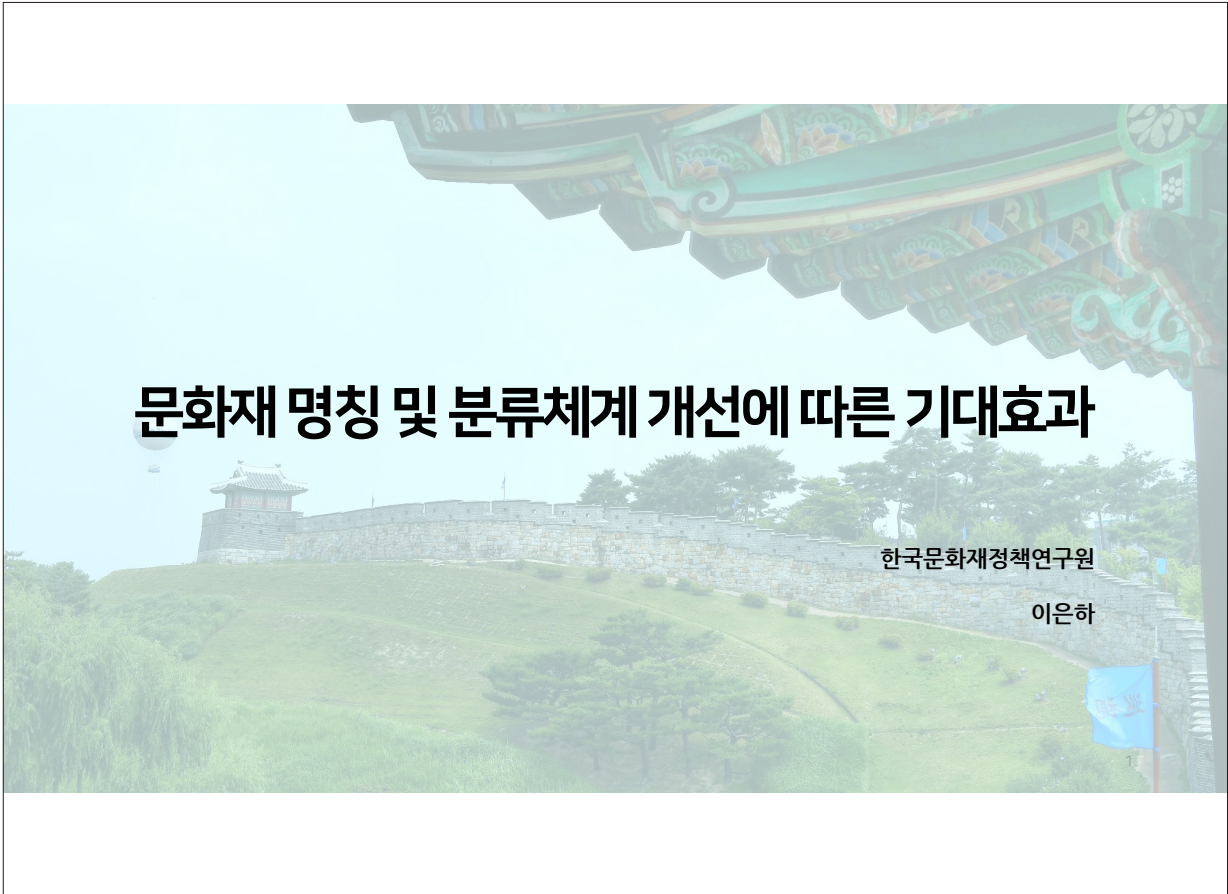
주제발표 2.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



목 차

- 1 우리나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연혁
- 2 국제규범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2

Part 1,

우리나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연혁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1, 우리나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연혁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 형성

‘문화재’ 용어는 1950년 5월 30일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처음 사용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자국의 유산을 총칭하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그 범위에 종전 「국보보존법」의 건조물·보물 등과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신규의 무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포함

4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1, 우리나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연혁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 형성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 1960년 11월 10일 국무령 제92호로 공포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에서 최초로 '문화재'가 법정용어로 사용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의 사용이 일반화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및 광복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수용
- 우리 유산을 통칭하는 문화재의 용어 사용과 함께 그 분류체계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현재 민속문화재) 설정

5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1, 우리나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연혁

문화재 정의 및 분류체계 구체화

문화재 정의의 구체화

<표 1> 법령 연혁상의 문화재 정의

구분	문화재 정의
문화재보호법 (1962.01.10)	본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개정 (1999.01.23)	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2010년 개정 (2010.02.04)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의는 제정 당시 각 호에 계기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포괄하는 개념
- 추후 개정을 통해, 문화재 정의에 인간의 인공작용 및 정신활동에 의한 유형·무형의 유산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을 포함하는 개념 징표와 가치요소를 추가

6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1, 우리나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연혁

문화재 정의 및 분류체계 구체화

문화재 분류체계 범위의 구체화

1999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문화재에 서적, 기념물 중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에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자연 현상을 추가
2010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에 놀이, 의식, 기념물 중 사적 지정대상에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을, 기념물 중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에 지형을 추가 민속자료의 명칭을 민속문화재로 변경
2015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환하면서 범위 확대 유형·무형의 민속문화재를 유형의 문화적 소산에 한정된 민속문화재로 정의

7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1, 우리나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연혁

문화재 개념 및 보호제도 범위 확대

문화재정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관리주체 및 수단 확대와 문화재보호법 분법 및 문화재법령 확대가 이루어짐

-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가 보호대상 문화재 중에서 가치가 높은 중요한 문화재를 지정하고 집중 및 중점 관리하는 중점보호주의를 채택·운영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하여 지정 및 관리주체를 확대

〈표 2〉 문화재 관련 법률(안) 현황 및 동향

제정	문화재보호법(62년) → 문화재기금법(99년) → 고도보존법(04년) → 문화유산신탁법(06년) → 문화재수리법 매장문화법(10년) → 신라왕경법(19년) → 세계유산법, 역사문화권법, 풍납토성법(20년)
발의	자연유산법, 근현대유산법(20년) → 국외소재유산법, 궁능문화유산법(21년) *문화재 용어 일괄 변경(문화재 → 문화유산)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발의(21년)
연구	문화재 법제 개편 연구(국가유산기본법(가칭) 제정 등(21년))

8

Part 2,

국제규범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9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2, 국제규범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UNESCO가 체결국의 유산 보호에 관한 협력업무를 담당

〈표 3〉 세계유산협약의 세계유산 분류체계 및 규율범위

분류체계		규율범위	비고
문화유산	기념물	건축물, 기념비적 조각과 회화, 고고학적 성격의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 그리고 역사, 예술 또는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여러 요소의 복합체	세계유산협약 제1조
	건물군	독립되거나 연결된 건물들의 군집체로서, 그의 건축, 동질성 또는 경관에서의 장소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유적지	사람의 소산 또는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 미학, 민족학 또는 인류학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자연유산		물리적·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로서, 미학이나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세계유산협약 제2조
		지질학적·지형학적 생성물,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정확하게 구획된 지역으로 학술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자연 유적지 또는 정확하게 구획된 자연지역으로, 학술,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문화 및 자연 복합 유산		협약의 제1조 및 제2조에 명시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	세계유산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46항
문화경관		문화재이자 협약 제1조에 지정된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	세계유산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47항

10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2, 국제규범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UNESCO가 체약국의 유산 보호에 관한 협력업무를 담당

〈표 4〉 무형문화유산협약의 무형문화유산 분류체계 및 규율범위

분류체계	규율범위	비고
무형문화유산	정의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	무형유산협약 제2조제1항
	분야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무형유산협약 제2조제2항

1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2, 국제규범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UNESCO 보호조약은 유산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

〈표 5〉 유네스코 유산보호 관련 협약의 규율범위

조약(협약)명	채택일(발효일)	규율범위	비고
1954년 전시문화재보호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05.14. (1956.08.07.)	국민의 문화적 유산에 중요성을 갖는 동산 및 부동산문화재 및 소장공간과 집합지	유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의 동산과 부동산
제1의정서	1954.05.14. (1956.08.07.)		
제2의정서	1999.03.26. (2004.05.05.)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1970.11.14. (1972.04.24.)	각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 따라 지정한 재산으로서 진귀한 수집품, 고고학적 물품, 역사와 관련된 인물의 생애와 국가적 사건과 관련된 재산, 100년 이상 묵은 골동품, 진귀한 필사본 등	유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의 동산

12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2, 국제규범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표 5〉 유네스코 유산보호 관련 협약의 규율범위(계속)

조약(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규율범위	비고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11.16. (1975.12.17.)	문화유산 :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자연유산 : 자연의 기념물,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 유적지	문화유산 : 부동산의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 중 사적 자연유산 : 부동산의 기념물 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
수중유산조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001.11.02. (2009.01.02.)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최소 100년간 수중에 위치해온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흔적	수중에 있는 유형의 동산과 부동산(한국 미가입)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10.17. (2006.04.20.)	공동체·집단 및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 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표상·지식·기술 및 이와 관련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공간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와 관련된 무형유산 및 유형물 포함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10.20. (2007.03.18.)	문화다양성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 문화적 표현 :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귀결되는 표현으로서 문화콘텐츠를 가지는 것	문화의 다양성 및 표현 1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2, 국제규범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UNESCO 국제규범상 개별 유산들을 총칭하는 용어 사용 부재, 국가별로는 다양

- 각 국가들은 협약 제정 당시 운영하는 자국의 법령용어에 맞추어 협약의 명칭을 번역
- 자국의 법령체계에 맞추어 별도의 용어로 자국의 유산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운영
- 하나의 법률에서 유산들을 총칭하는 용어 사용 국가와, 개별 법률에서 유산별로 별도의 용어 사용 국가로 구분

〈표 6〉 국가별 유산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운영 방식

구분	국가명	상위분류(근거법령)	하위분류
하나의 법률에서 유산들을 총칭하는 용어 사용	한국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일본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전통적건조물군, 문화적경관
	프랑스	유산(유산법전)	역사적 기념물(부동산문화재, 동산문화재), 자연·문화유적지(자연기념물, 자연문화유적지)
	북한	민족유산(민족문화유산보호법)	물질유산(역사유적, 려사유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명승지, 천연기념물)
개별 법률에서 유산별로 별도의 용어 사용	영국	동산문화재	보물
		부동산문화재	선경기념물, 등록공원·정원, 등록전쟁유적지 등재건축물, 등재보존구역, 난파선보존구역
	중국	문물	이동가능문물, 이동불가문물, 문물집중지
		비물질문화유산	언어 및 문화작품, 전통예술, 전통기술, 민속의례, 전통체육 및 연희, 기타
		풍경명승구	자연경관, 인문경관 비교집중
자연보호구	생태계 등, 동식물생물권, 특수지형, 자연유적, 기타		

14

Part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5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문화재 용어 재정립

‘문화재’ 용어의 한계 탈피

- ❖ 현행 법령상 문화재 용어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
- ❖ 그러나 문화재 용어 도입 당시 사회적 배경과 사전적 의미의 언어학적 해석으로, 문화재는 재화의 성격이 강한 협소한 의미로 인식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문화재 정의 :
 - ①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 ② 문화재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따위를 이르는 말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 사용의 혼란 해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16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문화재 용어 재정립

'문화재' 용어의 한계 탈피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 사용의 혼란 해소

❖ 문화재의 사전적 의미 및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용어의 개선 필요

- 문화재에 대한 법령상의 정의와 사회적 인식 간 차이 존재
-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문화적 소산으로서 재화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일부 지적

17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문화재 용어 재정립

'문화재' 용어의 한계 탈피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 사용의 혼란 해소

❖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의 관리 및 분류체계에 혼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문화유산 정의 :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계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사회 또는 인류사회 문화적 소산과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

❖ 문화유산 개념은 국제협약상의 문화유산 개념과 일치하지 않고,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이 제외되어 유산 관리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바, 모든 유산을 포괄하고 역사와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재 용어의 개선 필요

-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단순 치환하여 대체하는 경우, 유네스코 분류체계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식의 혼동 발생
- 기존의 문화재가 내포하는 한정된 의미에서, '미래지향적 포괄적 보호' 의미로 확장할 수 있는 '유산'의 용어 정립 필요 (예시: 국가유산)

18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문화재 외연 확대

세계유산 및 국제협약과의 연계성-정합성 확보

문화재 분류체계의 체계성-일관성 확보

국민 친화적 · 포괄적 미래유산 체계에 따른 문화유산 향유 증진

❖ 유네스코 국제규범과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가 불일치하여 국제협력 관계에 혼란

- 문화재 분류체계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 세계유산 등재 시, 국제기구와의 협력(등재활성화) 및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적극 대응, 우리나라 문화유산 세계화에 이바지

연번	등재 목록	등재년도	구분
1	석굴암 · 불국사	1995	문화유산
2	해인사 장경판전		
3	종묘		
4	창덕궁	1997	
5	화성		
6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	
7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		
8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자연유산
9	조선왕릉	2009	문화유산
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	
11	남한산성	2014	
12	백제역사 유적지구	2015	
13	신사, 한국의 신지승원	2018	
14	한국의 서원	2019	
15	한국의 갯벌	2021	자연유산

(원)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현황
(오른쪽)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사

*출처: 문화재청(202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재 행정



*출처: 한국경제, 동아일보(2022) 기사 갈무리

19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문화재 외연 확대

세계유산 및 국제협약과의 연계성-정합성 확보

문화재 분류체계의 체계성-일관성 확보

국민 친화적 · 포괄적 미래유산 체계에 따른 문화유산 향유 증진

❖ 그러나, 유네스코 국제규범은 모든 유산을 총칭하는 용어의 사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산유산과 부동산유산, 무형유산을 별도의 협약에서 규율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문화재를 국제기준의 분류체계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

- ❖ 전체적 방향과 대분류 등의 큰 기준은 국제규범과 정합성을 맞추되, 대분류와 중분류의 개념 및 범위 설정 등에서 국내의 문화재 형태와 속성, 관련 소관법률에 맞는 기준과 합의가 필요

20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문화재 외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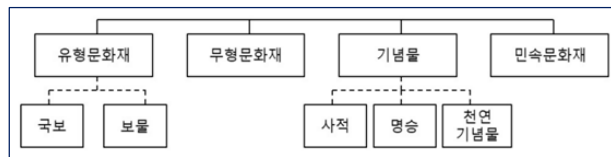
세계유산 및 국제협약과의 연계성·정합성 확보

문화재 분류체계의 체계성·일관성 확보

국민 친화적 · 포괄적 미래유산 체계에 따른 문화유산 향유 증진

-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분류기준에 형태와 속성이 다중으로 적용되어 관리체계에 혼란

<표 7>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



- ❖ 국제규범의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문화재법령 및 행정체계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재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

- 문화재의 유산 형성차원에서 대분류를 **문화적 소산인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자연적 소산인 자연유산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층위를 구체화할 필요 있음

2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문화재 외연 확대

세계유산 및 국제협약과의 연계성·정합성 확보

문화재 분류체계의 체계성·일관성 확보

국민 친화적 · 포괄적 미래유산 체계에 따른 문화유산 향유 증진

- ❖ 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민 삶의 질 제고

- 유산에 내재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가치의 활용 및 진흥**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복합된 생활 인프라의 활성화.** 예시)역사적 도시공원
- **고택, 전통조경, 옛길, 다양한 동식물 등 생활 속 자연유산의 활용 확대**
- **지역문화재 활용 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지역 문화재활용사업은 2008년 4건에서 2021년 400건으로 증가)

22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문화재 외연 확대

세계유산 및 국제협약과의 연계성·정합성 확보

문화재 분류체계의 체계성·일관성 확보

국민 친화적 · 포괄적 미래유산 체계에 따른 문화유산 향유 증진

❖ 지역별 · 권역별 역사공간 활성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가능

• 역사문화유산 기반 지역주민 참여 및 상생 ·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유산의 확장을 통해 방치된 역사문화유산과 현대의 자원들까지 주민들이 함께 보호
- 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주인 의식 고취를 통해 공동체 형성. 예시) 낙후되고 버려진 폐 한옥을 주민들이 공동매입하여 활용

• 역사문화권 · 지역공동체의 가치 조명 · 활용을 통하여 역사문화유산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문화재의 잠재적 산업가치를 서비스화하고 문화재가 소득창출의 연결고리가 되는 선순환적 역사문화유산 생태계 실현
-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유산형 경제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도움

2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Part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문화재 외연 확대

세계유산 및 국제협약과의 연계성·정합성 확보

문화재 분류체계의 체계성·일관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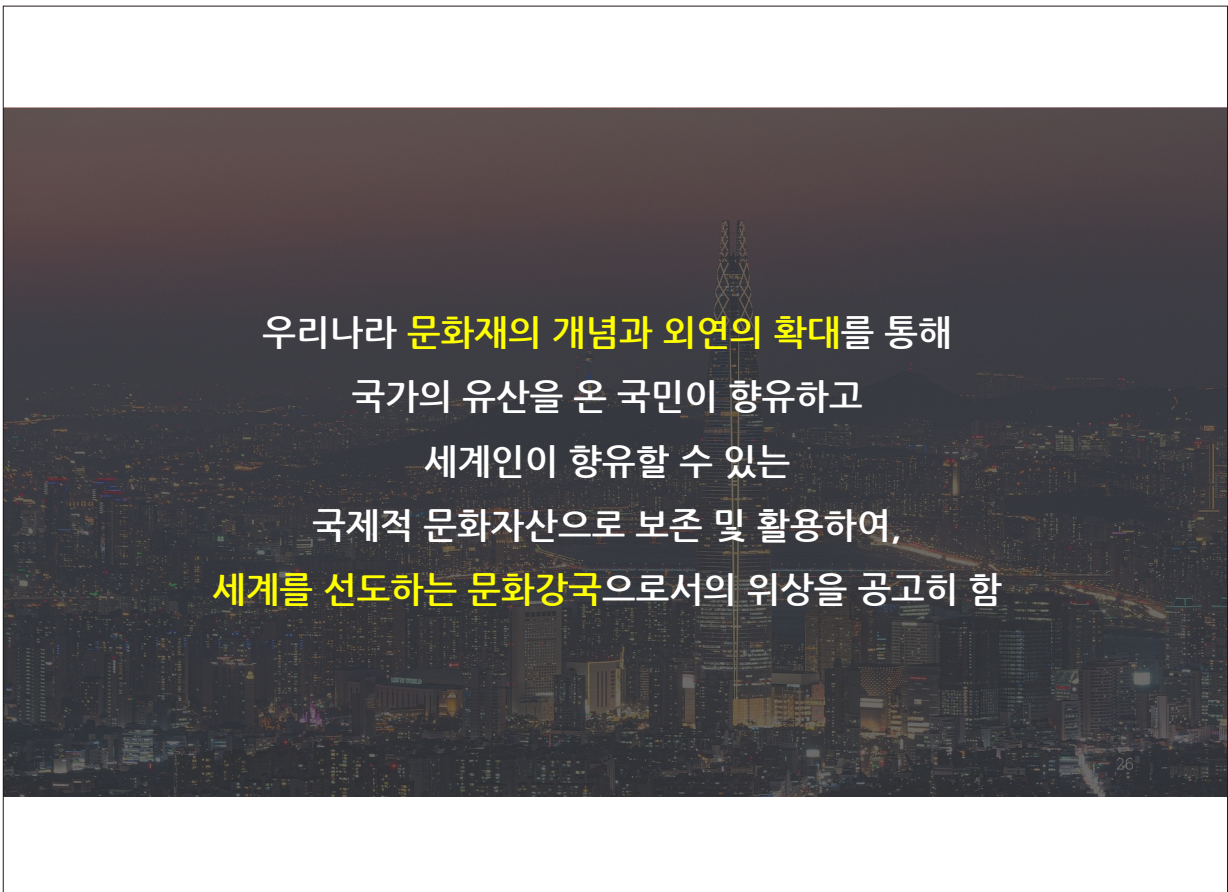
국민 친화적 · 포괄적 미래유산 체계에 따른 문화유산 향유 증진

❖ 유산의 경제적 가치 발견을 통한 국가문화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 세계유산 등재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대

- 제주 : 관광객 380만명, 소비지출효과 3조 134억원, 생산유발효과 3조 5406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5107억원 등 (제주연구원, 2016)
- 남한산성 : 생산유발효과 8,08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690억원, 고용유발효과 3,695명(경기연구원, 2014)

24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비용 추정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비용 추정

2022년 3월 31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용 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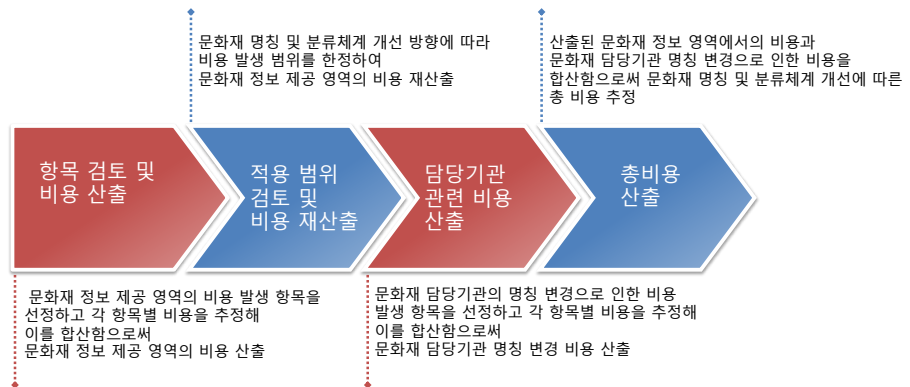
목차

1. 비용 추정 개요
2. 문화재 정보제공 영역 비용 추정
3. 문화재 담당기관 명칭 변경 비용 추정
4.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 개선 비용 종합

1. 비용 추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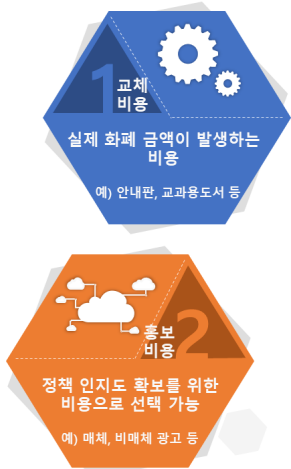
비용 추정 절차

-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시 비용 발생 영역: 문화재 정보 제공 영역+ 문화재 담당기관
- ▶ 비용 발생 범위: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범위를 의미,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따라 달라 변동



2. 문화재 정보 제공 영역 비용 추정

비용 발생 범위 검토



항목	세부항목	분석 및 평가	비용 영향성
오프라인 정보 서비스	문화재 안내판	해설 안내판의 교체 비용이 발생함	높음
	전시패널	전시패널 교체 비용이 발생함	중간
	키오스크	DB(데이터베이스) 및 UI 수정 비용이 발생함	중간
표지판	QR 코드 서비스	전시 패널 교체 시 연계 수정 가능	낮음
	표지석	교체필요성 없거나 절거 대상임	낮음
교과용도서	도로표지판	문화재의 고유 명칭만을 표기하므로 교체 필요성 없음	낮음
	국정교과용도서	매년 개정판이 출시되므로 비용 영향성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교정 및 감수의 위탁체제에서는 다소의 교정 및 감수 비용증가가 예측됨	중간
간행물	검정교과용도서		중간
	문화재청	소모성이 강하므로 비용 영향성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낮음
	지방자치단체		
절도정			
온라인 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사전류		
홈페이지(web)	홈페이지(web)	콘텐츠에 대한 기획·디자인과 인터넷상의 구동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함	중간
	스마트앱(App)		
국민 생활 편의 기기	주소변경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계획에 준함	낮음
	기타	유관련 부문(교통, 지도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 수정DB(데이터베이스)마련 및 배포	낮음
홍보	대국민 홍보	홍보 관련 비용은 기획 및 진행계획이 수립되어야 산출 가능	높음

출처: 문화재청(2015),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일부 수정

2. 문화재 정보 제공 영역 비용 추정

문화재 안내판 교체 비용 추정

- ▶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의 정보와 가치를 관람객에게 공공언어로 알려주는 길잡이로 해설안내판과 기능성 안내판이 있다.
- 해설안내판은 성격에 따라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으로 구분되며, 문화재에는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문화재청, 2020)



출처: 문화재청(2020),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2. 문화재 정보 제공 영역 비용 추정

문화재 안내판 교체 비용 추정

유형별 문화재 안내판 비용

유형별 안내판 교체 비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시된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사례를 토대로 산출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국가지정문화재	7,790,000	2,630,000	1,650,000
시도지정문화재	4,190,000	2,520,000	1,450,000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조달청 입찰공고번호: 20191139844-00).
 시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20191139842-00)

문화재 분류에 따른 안내판 교체 비용은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 내역(584건)을 활용

문화재 분류별 안내판 유형별 교체 비용 산출

$$\text{총 안내판 교체 비용} = \sum_i \sum_j (i \text{ 유형 } j \text{ 분류 안내판 비용} \times i \text{ 유형 } j \text{ 분류 안내판 수량})$$

4,919,619,000원

교체 수량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 안내판 검색
 문화재 분류별 안내판 유형별 안내판 교체 수량 파악
 - 종합안내판, 215개, 권역안내판 23개, 개별안내판 1,938개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합계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06

2. 문화재 정보 제공 영역 비용 추정

기타 오프라인 정보서비스 교체 비용

전시 패널 교체비용	키오스크 교체비용
<p>기준 단가 산출 나라장터에 공시된 박물관·전시관 전시패널 개선 사업 사례(7건)</p> <p>교체비용 도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패널 제작 사례 11.87%</p> <p>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비용 산출: 9,366,000원</p> <p>×</p> <p>교체 건수: 62곳 국립박물관 51곳, 조선왕릉전시관과 10개 역사문화관</p> <p>580,692,000원</p>	<p>기준 단가산출 나라장터에 공시된 산림박물관 키오스크 검색프로그램 제작용역 ※ 구성: 인건비, 제경비(인건비의 %), 기술료, 부가세</p> <p>개발 비용 실질화 2022년 SW 기술자 임금 실태조사(승인통계 제 37001호) ※ UI/UX 개발자, 디자이너, 응용SW 개발자, 임베디드 SW 개발자</p> <p>키오스크 개선 비용 산출: 3,691,000원</p> <p>×</p> <p>교체 건수: 51곳</p> <p>188,241,000원</p>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07

2. 문화재 정보 제공 영역 비용 추정

교과서 도서 수정 비용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서와 지도서로, 교과서 도서의 유형은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구분
- 과용 도서 수정 비용은 교과용 도서를 신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에 개발 및 검·인정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수정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
-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에 의해 5인 이상으로 구성, 자문위원회의 총원은 간사를 포함한 6명
- 전문가 활용비는 교정 및 감수에 참여 사례비 산정기준을 A급(300,000만원)으로 산정
- 수정이 요구되는 사회 관련 도서는 총 169권(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2022년 교과용 도서 목록)

교과용도서 수정 비용 = 자문위원회의운영비용 × 수정 교과용도서수
 ※ 자문위원회의 운영비용 = $(\sum_i \text{자문위원}_i \times \text{자문위원 사례비}) + \text{자문위원회의 회의비}$

182,520,000원

2. 문화재 정보 제공 영역 비용 추정

온라인 정보서비스 수정 비용

홈페이지(누리집) 수정 비용

기준 단가 산출
 나라장터에 공시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기능 개선 사례 10건 평균 비용

개발 비용 실질화
 2022년 SW 기술자 임금 실태조사(승인통계 제 37001호)

홈페이지 수정 비용 산출: 8,409,000원

×

수정 건수: 36개
 왕릉(1), 궁·종묘(5), 기관(7), 기타(23), 국·공립 박물관(437)

302,724,000원

어플리케이션 수정 비용

기준 단가 산출
 나라장터에 공시된 문화재 안내 어플리케이션 구축 용역

개발 비용 실질화
 2022년 SW 기술자 임금 실태조사(승인통계 제 37001호)

어플리케이션 수정 비용 산출: 6,786,000원

×

수정 건수: 7개

47,502,000원

2. 문화재 정보 제공 영역 비용 추정

개선 비용 추정 결과

개선안 ②

➢ 모든 문화재 유형이 교체 대상

구분	세부항목	비용
1. 오프라인 정보서비스	안내판	4,919,619,000
	전시 패널	580,695,000
	키오스크	188,241,000
2. 교과용 도서	교과용도서	182,520,000
3. 온라인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302,724,000
	어플리케이션	47,502,000
총계		6,221,301,000

개선안 ①, ③

➢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도지정·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안내판 교체: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제외
 전시 패널: 교체 대상 건수 비중 27%(2021년 기준)

구분	세부항목	비용
1. 오프라인 정보서비스	안내판	2,440,244,000
	전시 패널	156,865,000
	키오스크	188,241,000
2. 교과용 도서	교과용도서	182,520,000
3. 온라인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302,724,000
	어플리케이션	47,502,000
총계		3,318,096,000

3. 문화재 담당기관 명칭 변경 비용 추정

▶ 기관명칭 변경 소요 비용 항목

※ 공공기관 명칭 변경 및 행정시군 통합 사례를 통해 비용 발생 항목 도출

항목	세부항목	분석 및 평가
하드웨어 정비	현판	현판 교체 비용이 발생함
	안내판, 표찰	안내판 및 표찰 교체 비용이 발생함
	기타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 깃발 등의 교체 비용이 발생함
소프트웨어 정비	홈페이지(web)	콘텐츠에 대한 기획·디자인과 인터넷상의 구동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함
	스마트앱(App)	
	전자결재시스템	
홍보	대국민 홍보	홍보 관련 비용은 기획 및 진행계획이 수립되어야 산출 가능

▶ 문화재 담당기관 명칭 변경 비용 추정 (274,833,000원)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주요 항목별 교체 비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시된 주요 사례

항목	세부항목	비용 추정	적용 사례
하드웨어 정비	현판	72,751	물가상승분 반영 현판 공사 비용
	안내판, 표찰	31,148	물가상승분 반영 표찰 제작 비용
	기타	34,858	물가상승분 반영 공인, 깃발 등 기타사항 제작 비용
소프트웨어 정비	홈페이지(web)	8,409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비용
	스마트앱(App)	6,786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개선 비용
	전자결재시스템	120,881	물가상승분 반영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
계		274,833	

4.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비용 종합

▶ 최종 비용 추정 결과

※ 비용 합산 시 중복되는 항목(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비용 제외

구분	개선(안)	비용
문화재 정보 제공 영역 비용	2안	6,221,301,000원
	1,3안	3,318,096,000원
문화재 담당기관의 명칭 변경 비용		259,638,000원
비용 범위		3,577,734,000 ~ 6,480,939,000원

▶ 시점별 소요 비용 추정

※ 교체항목별로 소요 비용과 시급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

(단위: 천원)

항목	세부항목	판단기준		소요 기간	구분	비용		비고
		비용	시급성			개선안 ①, ②	개선안 ③	
오프라인 정보 서비스	문화재 안내판	높음	연간 500~800건 교체 진행중	4년	당해 연도(T년)	1,506,084	2,267,205	전체항목
	전시패널	낮음	관람객을 고려한 순차적 교체	3년	T + 1년	716,789	1,508,571	안내판, 키오스크, 교과용도서
	키오스크	낮음	바로 교체 필요	당해년도	T + 2년	725,715	1,528,028	안내판, 키오스크, 교과용도서
교과용 도서	국정교과용도서	낮음	교과서 채택에 따라 순차적 교체	4년	T + 3년	680,358	1,346,353	안내판, 교과용도서
	검정교과용도서				합계	3,628,946	6,650,157	
온라인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web)	중간	바로 교체 필요	당해년도				
	스마트앱(App)	낮음						
담당기관 명칭변경		낮음	바로 교체 필요	당해년도				

주: 당해 연도 이후 안내판 및 키오스크 교체 비용은 전년 비용에 10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33%)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함

감사합니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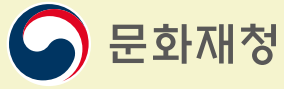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Korea Cultural Heritage Policy Institute